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47

제출년월일 : 2012. 6. 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최근 당직근무 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증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직 근무의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음.

나. 2006. 2. 2. 당직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 후 6년간 인상이 없었으며, 타구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60,000원)보다 적은 수당을 받고 있음.

다. 이에 따라 당직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수당 조정(안 제3조제1항)

1) 현행 :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50,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2) 변경 :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60,000원씩 지급하고,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익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0,000원씩 지급으로 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예산조치

가. 소요 예산 : 27,280,000원

나. 부족분 추경 예산에 편성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등) 제1항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2. 5. 31. ~ 6. 10. (제출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 6. 12.)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조례는 구"를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를 "당직근무자별로"로 하고 "50,000원씩"을 "60,000원씩"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익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0,000원씩 지급한다.

제3조제2항 중 "날인후"를 "날인 후"로 한다.

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 · 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 · 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일 · 숙직 당직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50,000원씩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당직근무자별로---------- 60,000원씩 --------. 다만,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익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 근무자에게는 70,000원씩 지급한다.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일 · 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날인후 ----------.

제4조(시행규칙) 기타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그 밖에 ---------- ---------- --.